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Q.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은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 피고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편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법에 의하

여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①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②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③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④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⑤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⑥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어떻게 취급될까?



Q. 망인은 자녀로 甲과 乙을 두었다. 망인으로부터 甲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乙은 유류분 제도 시행 후에 유증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甲은 乙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이 망인 생전에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특별수익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A. 민법 제1112조 이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7. 12. 31. 신설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 또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상속인간의 공평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소급입법에 의

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속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한편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 甲이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 원 상당의 재산은 乙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甲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는 없겠지만, 甲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법원사람들)